

2019년도 제19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9. 23.(월요일), 10:0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2명 참석
 - 심의위원 : 강상욱, 손승우(분과위원장)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19-189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841건(안전번호 제2019-115977호호~117040호)
 - 회의결과: 시정권고 제도의 시행일인 2009. 7. 23. 전에 업로드 된 단편소설 게시물 10개 안전(제2019-117024호~117033호)은 허용되는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인지에 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점, 시정권고 제도의 취지가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의 빠른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인데 해당 안전들이 제도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권리자가 10년 넘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데 행정기간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 그 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전 게시물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만을 권고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19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189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회의록 4쪽의 온라인서비스명, 6쪽의 저작물명 공개여부에 관하여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온라인서비스명과 국내 미개봉된 영화로 영화 정보가 드러난 저작물명은 비식별 처리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자는 의견임
- B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국내 개봉 전인 영화나 최신 개봉 영화의 경우에는 비공개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웹하드에서는 최신 개봉 영화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 사안별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해보임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

인하며 온라인서비스명, 저작물명은 비공개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전상정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전은 안전번호 제2019-115977호~117040호로 총 3,841건임

안전번호 제2019-115977호~제2019-115982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 일본 애니메이션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총 87개 게시물)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15977호는 카페 회원에게만 공개된 게시물로, ○○(○○)관련 카페에서 애니메이션 ‘닥터 스톤(2019)’ 한 화 전체분량(24분, 우리말 자막포함)을 스트리밍으로 제공한 사안임(총 1개 게시물)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시하면서) 민원인이 신고한 URL 주소를 입력하면 “카페 멤버에게만 공개된 게시물입니다.”는 메시지가 보임

누구나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도구(copy112.or.kr)를 이용하여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는 URL 주소를 신고할 수 있고 복제물 3단 채증 자료(목록화면, 전송화면, 실행화면)를 등록할 수 있음

본 건은 민원인이 직접 신고도구를 이용하여 신고한 것인데, 심의 대상 게시물의 주소만 특징이 되고 채증 자료가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아 보호원 직원이 해당 카페에 가입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확인하였음

보호원이 임의로 해당 카페 내 불법복제물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민

원인 신고에 따라 민원인이 특정한 주소의 게시물만을 조사하였는바
보호원의 본 건 자료수집 절차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해당 카페는 불법복제물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 운영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폐쇄적 성격의 커뮤니티로 보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15978호~115982호는
블로그에 게시된 게시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음

안건번호 제2019-115978호는 '닥터스톤(2019)' 한 화 전체분량(우리말
더빙)을 스트리밍으로 제공한 사안임(총 6개 게시물)

일본 애니메이션 '닥터스톤(2019)'은 일본 Tokyo MX 채널에서 2019.
7. 5.부터 현재까지 매주 방송 중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2019-115979호~115982호는
'후르츠 바스켓(2001)' 한 화 전체분량(우리말 더빙)을 스트리밍으로 제
공한 사안임(총 80개 게시물)

일본 애니메이션 '후르츠바스켓(2001)'은 일본 TV도쿄 채널에서 2001.
7. 5.부터 12. 27.까지 방영 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투니버스'와 '애니
원' 채널에서 방영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 2019-115977호~제2019-115982호 일본 애니메이션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안건번호 제2019-115977호 폐쇄적 성격의 커뮤니티 카페의 회원 수를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의 카페를 제시하면서)해당 카페는 2015. 10. 16. 개설되었으며, 심의일 현재 회원 수는 614명임

- A 위원 : 안전번호 제2019-115978호~115982호는 하나의 안전에 게시물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유에 대하여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의 심의 시스템은 하나의 안전에 5가지 조건 (OSP명, 저작물명, 게시자, 저작물유형, 복제전송형태)이 일치하면 한 개의 안전으로 묶고 있음
- A 위원 : 안전번호 제2019~115979호는 동일한 블로그에서 26개 게시물을 제공하는데, 모두 같은 저작물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블로그를 제시하면서)게시자가 일본 애니메이션 '후르츠 바스켓(2001)'을 한 화씩 블로그에 업로드하고 있음
- B 위원 : 안전번호 제2019-115979호~115982호의 안전표를 보면 '[중점] 후르츠 바스켓(2001)[긴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2001년도 저작물에 대하여 긴급하게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 것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의 담당자가 심의위원회에서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의미로 '[긴급]' 표시를 사용한 것으로 보임
(보호원 내부 규정을 제시하면서)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 업무 처리 규칙」 제3조 제1호는 “긴급 대응 저작물은 현재 상영중 또는 상영예정인 영화 저작물이나 정식 공표예정인 음악저작물 등과 같이 불법복제물 유통에 따른 피해가 크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호원이 인정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중점 보호 저작물은 긴급 대응 저작물을 제외하고 시급한 조치 등 중

점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호원이 인정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음

위 규정에 따르면 ‘긴급’과 ‘중점’의 교집합이 생기면 안 되는데, 지금 안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긴급’과 ‘중점’이 겹치고 있음

보호원에서 정리가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되며 전문위원 역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

- B 위원 : 제3조 제1호의 “현재 상영 중”의 정의에 대하여도 최초 개봉한 영화만 의미하는 것인지, 재개봉한 영화도 포함하는 것인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음

보호원에서 중점 보호 저작물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 업무 처리 규칙」의 중점 보호 저작물 선정 기준표를 제시하면서)방송 분야의 경우, “지상파, 케이블, 종합편성 채널 시청률 각 1~20위”, “현재 방송 중이거나 방송 1개월 이내의 애니메이션 및 해외드라마” 명시되어 있는데 본 건 저작물은 위 기준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

- A 위원 : 보호원에서는 중점 보호 저작물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고, 행정 리소스를 자주 업데이트 하여 최신 저작물 보호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 B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며, 공표한지 20년이 다 되어가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지금 ‘긴급’ 하게 처리해야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임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건은 민원인이 신고하였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에서 우선 처리해달라는 뜻으로 '긴급'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임
전반적으로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 A 위원 : 민원인의 요청하여 심의하는 건에 대하여 '긴급'이 아닌 다른 명칭으로 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성원영 전문위원 : '긴급', '중점' 표시 문제에 관한 위원님들 의견을 보호원에서 불법복제물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팀에게 전달하겠음
- A 위원 :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보임
안전번호 제2019-115977호~115982호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며,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보임
- B 위원 :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동의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15977호~115982호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 조치의 권고를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117024호~117040호는 보호원이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네이버, 다음의 이용자가 황순원(1915. 3. ~ 2000. 9)이 1941년 2월 「인문평론」에 발표한 단편소설 '별'을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의 저작물은 신탁단체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KOSA)가 신탁관리하고 있음

첫 번째 쟁점은 저작권법 제133조의3 신설 전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 여부임

지난 제3분과위원회(2019. 9. 9. 개최, 제184회)에서 같은 내용을 보고하였으므로 오늘 심의에서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음

특히 전문위원은 형사법적으로 전송권침해 행위가 실령 '즉시범'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저작권법 제133조의3이 신설되기 전 업로드된 불법복제물이 현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이상 그와 같은 게시물은 행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고, 금지되는 행정법규의 소극적용은 아니라는 의견임

지난 분과 회의에서도 2009. 7. 23. 전에 올린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는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한 바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전송권 침해의 성질에 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주신 바 있음

한편 복제권,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님

저작권법에 시정권고 제도를 마련한 입법자의 의도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유통이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므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원이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임

또한 저작권은 사적인 권리이고 저작권법위반죄는 기본적으로 친고죄임

본 건 저작물은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의 신탁관리 저작물로 확인되는데, 위 신탁단체나 출판사, 저작자의 유족 등은 2001년 내지 2007년에 업로드 된 본 건 심의대상 게시물에 관해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나아가 보호원은 저작권 보호라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제한된 행정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투입하여야 할 것임

보호원이 권리자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치한 단편소설 복제물을 모니터링 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행위가 효율적인 저작권보호 업무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있음

(게시일자가 정리된 표를 제시하면서)제2019-117024호~117033호(10개 안건)는 모두 시정권고 제도의 시행일인 2009. 7. 23. 전에 업로드 된 복제물임

(카페명과 회원 수 정보를 제시하면서)특히 제2019-117024호는 게시일자가 2006. 11. 13.이고, 회원 수는 13명임

제2019-117026호는 게시일자가 2007. 8. 8.이고, 휴면 카페로 회원 수는 462명임

제2019-117027호~117029호는 블로그에 게시되었음

(게시일자가 정리된 표를 제시하면서)두 번째 쟁점으로 저작권법 제 133조의3 신설 후 게시물 중 제2019-117034호~117040호(7개 게시물)는 보호원이 민원인 신고 없이 '중점 보호 저작물'의 복제물을 조사(모니터링)한 것임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 업무 처리 규칙」을 제시하면서)출판물의 경우 '중점 보호 저작물'은 "출간 3개월 이내 또는 주·월간 베스트·스테디셀러 1~50위"가 중점 보호 저작물로 선정될 수 있음

교보문고, Yes 24 등 인터넷 사이트의 스테디셀러 목록에서 해당 저작물명을 찾을 수 없었음

Yes 24는 200위까지 스테디셀러 목록을 공개하고 있는데, 125위에 '중고생이 꼭 읽어야 할 한국단편소설 70'이 있지만 해당 저작물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173위에 황순원의 소나기(다림, 2002년 출간)가 있음

보호원이 어떠한 이유로 해당 저작물을 중점 보호 저작물로 선정되었는지는 알 수 없음

(카페명과 회원 수 정보를 제시하면서)특히 안전번호 제2019-117035호는 해당 카페(카페명: '우연이 문학')의 회원수가 56명에 불과하여 보호원의 자체 모니터링 활동이 타당한지에 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카페에서 동일한 복제·전송자가 다수의 어문저작물을 제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정을 권고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 B 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이 신설되기 전 업로드된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전체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전체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지는 않았고, 제2분과위원회(2019. 7. 23. 개최, 제2019-123회), 제3분과위원회(2019. 9. 9. 개최, 제2019-184회)에서 유사한 사례를 심의한 바 있음
검토보고서 하단의 각주를 참고하시면 됨
- B 위원 : 저는 지난 제3분과위원회(2019. 9. 9. 개최, 제2019-184회)에서 소수 의견으로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네이버 밴드와 같이 폐쇄적 성격이 강한 사이트의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부결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블로그를 통해 게시된 저작물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다는 점, 저작권자 등 권리자에 의한 적극적인 권리행사로 저작권 분쟁이 다수 발생하는 상황을 우려하여 가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었음
다른 안전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하지만, 시정권고 제도의 시행일인 2009. 7. 23. 전에 업로드 된 게시물 중 블로그 안전 총 3개(제2019-117027호, 117028호, 117029호)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다

는 점에 비추어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A 위원 : 위원님의 의견과 반대로, 시정권고 제도의 시행일인 2009. 7. 23. 전에 업로드 된 단편소설 복제물에 대해서는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것이 시정권고 제도의 본래 취지인 점,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제한된 행정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조치를 권고를 부결하자는 의견임
- B 위원 : 금번 3분과 심의위원회(총 3명의 위원으로 구성)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총 2명의 위원 출석)으로 개의하게 되었는데, 2명의 위원의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회 규정 제9조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총 3개(제2019-117027호, 117028호, 117029호) 안건은 가결 요건을 불충족하여 부결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다만 현 규정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어 추후 규정을 “가결한다”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해당 규정은 빠른 시일 내 개정을 추진하겠음
- B 위원 : 해당 사안은 향후 전체위원회에서 논의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성원영 전문위원 : 향후 전체위원회에서 논의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음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위 10개(제2019-117024호~117033호) 안전 중 블로그 게시물 총 3개(제2019-117027호, 117028호, 117029호)안전은 의견이 나뉜 것으로 보임

시정권고 제도의 시행일인 2009. 7. 23. 전에 업로드 된 단편소설 복제물에 대해서는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것이 시정권고 제도의 본래 취지인 점,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제한된 행정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조치 권고를 부결함

나머지 7개(제2019-117034호~117040호) 게시물에 대하여는 만장일치로 시정조치를 권고를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15983호~117023호는 모두 단순 복제한 복제물을 웹하드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이용에 무단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음악 '서울 밤(feat. 빈지노)(가수: 어반자카파)'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15991호는 웹하드에 게시된 것으로, 보호원에서 설정한 저작물명은 '서울 밤'으로 되어 있지만,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면 약 100개의 최신 음원파일이 있음

(음악 '술이 문제야(가수: 장혜진, 윤민수(바이브))'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16025호는 웹하드에 게시된 것으로 보호원에서 설정한 저작물명은 '술이 문제야'로 되어 있지만,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면 약 100개의 최신 음원파일이 있음

(영화 '안나'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16101호는 모바일 웹하드에 게시된 것으로, 2019. 8. 28. 개봉한 킷 배송 감독의 최신

영화임

(영화 '레플리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16957호는 밴드에 게시된 것인데, 키아누 리브스 주연의 '레플리카'는 2019. 9. 25. 국내 개봉 예정인 영화임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의 채증일자를 보면 2019. 9. 9.로 되어 있는데, 국내 개봉일 보다 2주 먼저 복제물이 유통되고 있음

- A 위원 : 안건번호 제2019-116957호 '레플리카' 영화는 해외에서 먼저 개봉된 것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위 영화는 해외에서 먼저 개봉한 것으로 알고 있음
- B 위원 : 개봉 예정작이 불법 복제물이 되어 유통되는 경우 복제된 경로를 추적하여 그 원인 및 소스를 찾아 보호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손승우 전문위원 : 보호원에서는 사후적 조치뿐만 아니라 사전적, 예방적 조치도 강화하여야 할 것임
불법복제물 모니터링도 양보다는 질적인 측면으로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음
영화를 예로 들면, 전체 모니터링 건수를 줄이더라도, 개봉 직전 또는 상영 중인 영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함
- B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영화 '안나', '레플리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

건번호 제2019-116994호는, 116998호, 117022호는 모두 밴드에서 첨부 파일 형태로 제공하고 있음

특히 117022호의 파일명은 '레플리카 2019(☆☆☆☆).mp4'로 되어 있는데, 복제물 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일명을 바꾼 것으로 보임 (영화 '엑시트'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17017호는 밴드에서 제공된 것임

해당 밴드는 최근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불법복제물이 제공된 밴드임

밴드명은 '□□□(□□□□□□)'인데, 밴드명과 달리 불법복제물이 다수 발견되고 있음

- B 위원 : 모두 불법 복제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심의일 현재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조치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A 위원 : 모두 단순 불법복제물이므로 이의 없이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115983호~117023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19-117024호~117033호는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함. 안전번호 제2019-115977호~117023호, 제2019-117034호~117040호는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손승우 분과위원장이 제19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19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10. 7.

분과위원장 손승우

위원 강상욱